

Form 64 0108-KO

현재 용도 신청서 소유자가 여럿인 구획의 농지 분류

RCW 84.34

이 양식을 카운티 감정인에게 제출하세요.

Assessor use only (감정인 전용)

Application approved	cation approved Home site(s) approved		
All parcel (land only)	Application denied	Home site(s) denied	
Date owners notified:	Fee returned: Yes	No Date:	
Assessor/Deputy signature:	disation for electification as form and a	grigultural land to the County Board of Fauglization	
Appear: fou may appear a defiled app	oncation for classification as faith and a	gricultural land to the County Board of Equalization.	
카운티:			
구획			
	!의 모든 소유자, 파트너, 회원 등을 기재) 및 구획 번호를 기재하세요.	
구획 1:	구획 4:	, , , , , = = , , , ,	
구획 2:	구획 5:		
구획 3:	1 7 3.		
구획 1 - 주소 및 법적 설명:			
전화:	이메일:		
Sec: Twp:	Rge:		
구획 2 - 주소 및 법적 설명:			
전화:	이메일:		
Sec: Twp:	Rge:		
구획 3 - 주소 및 법적 설명:			
전화:	이메일:		
Sec: Twp:	Rge:		
구획 4 - 주소 및 법적 설명:			
전화:	이메일:		
Sec: Twp:	Rge:		
구획 5 - 주소 및 법적 설명:			
전화:	이메일:		
Sec: Twp:	Rge:		

본 서류를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360-705-6705번으로 전화하세요. 텔레타이프 (TTY) 사용자는 711번으로 전화해 WA 중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V 64 0108-KO (7/8/2020) 1



이 신	<mark>l</mark> 청서와	관련된	모든 구획	을 단일 시	사업의 일	환으로 (거떻게 관리	리하고 있 !	는지 상세	히 설명하	ի세요. 감	정인이	모든	
구획	이 인접	하며 단	일 사업의	일환으로	관리되고	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기	가 정보를 S	요청할 수	- 있습니[다. 아울	러, 농	장
운영	자나 소	유자의	주거지 또	는 직원 주	택이 Wa	shingtor	n 행정법(V	Vashingto	n Adminis	trative C	ode, WA	C) 458-	30-31	7
에 명	<mark>경시된</mark> 기	준을 충	족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정	보도 요청	성할 수 있습	슼니다. 추	가 정보에	는 연방	소득세 횐	급및	일정, i	법인
정관	, 제휴 7	계약, 임대	내차 계약,	운영 계약	등의 문	서가 포함	학될 수 있	습니다.						

이 신청서와 관련한 모든 구획의 소유자 간의 관계를 설명하세요. 감정인은 인접 구획의 모든 소유자가 "가족"의 정의를 충족하는 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Washington 개정법[Revised Code of Washington, RCW] 84.34.020[6][b][ii]). 추가 정보에는 출생 증명서, 혼인 증명서, 주 등록 배우자 계약서, 입양 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증

본 신청서에 기재된 구획 소유자로서 우리는 토지가 84.34 RCW 조항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추가 세금, 이자 및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인지함을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인증합니다. 또한, 본 신청서 및 모든 부속 문서는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인증합니다.

소유지 사용에 따른 세금에 대한 동의는 계약이 아니며 입법부가 언제든지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RCW 84.34.070)

각 소유자의 정자체 이름	각 소유자의 서명	날짜

Assessor use only (감정인 전용)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CW 84.34.035, "...the assessor will submit notification of such approval to the county auditor for recording in the place and manner provided for the public recording of state tax liens on real property." [Form REV 64 0088]

Amount of processing fee collected: \$

Date:



농지 신청서 부록

각 구획 소유자는 개별 부록을 작성하고 이 신청서 양식에 첨부해야 합니다. 정의 및 추가 정보는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유자 이름: 구획 번호:

1. 면적: 작물: 관개 설비된 면적: 건지 면적:

작물 유형:

가축: 가축 유형:

목초지: 경작한 목초지인가요? 예 아니요

원예: 원예 활동 설명:

농장 건물: 직원 주택: 주택:

승마 용도: 승마 용도 유형:

수목지역:

수목지역을 가축의 방목/축사로 사용하나요? 예 아니요

기타: 기타 설명:

총 면적:

- 2. 타인에게 임대하여 농업용에 해당하지 않는 구획의 토지를 설명하세요. 지도상에 위치를 표시하세요.
- 3. 이 구획이 현재 용도 외의 다른 용도가 허가된 임대 또는 계약 대상인가요? 예 아니요

예라고 답한 경우 자세히 기재:

- 4. 토지 구획의 현재 용도를 설명하세요.
- 5. 토지 구획의 현재 건물(주택, 농장 건물, 직원 주택, 등)을 설명하세요.

해당 토지에 주택이 있는 경우, 이 주택은 농장 운영자 또는 소유자의 주거지입니까? 예 아니요 예라고 답한 경우, 농업 목적의 농지 사용 또는 운영에 주택이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 6. 이 신청서의 대상인 토지의 주 용도가 원예인 경우,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세요.
 - a. 다른 재배자에게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한 작물을 판매하나요? 예 아니요 예라고 답한 경우, 원예용 토지 중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한 작물의 저장 및 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은 얼마인가요?
 - b. 작물을 토양에서 재배하는 데 사용되는 면적은 얼마인가요?
 - c. 작물을 컨테이너에서 재배하는 데 사용하는 면적은 얼마인가요? 컨테이너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는 면적 중, 해당 토지의 몇 퍼센트가 포장되었나요?
 - d. 원예용 토지가 5에이커 미만인가요? 예 아니요 예라고 답한 경우, 해당 면적 중 몇 퍼센트가 현장 소매를 위해 일반 대중에게 열려 있나요?
- 7. 가축(유형), 작물, 건초 재배지, 목초지, 황무지, 수목지 등, 각 소유지 구역의 현재 용도를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소유지 지도를 첨부하세요. 가능한 경우 토양 품질 및 특성도 지도에 포함하세요. 5번 문항에 기재한 건물의 위치도 표시하세요.
- 8. 20에이커 미만의 구획 신청은 특정 최저 소득 또는 투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CW 84.34.020[2][b], [c], [d] 참조). 신청 대상인 모든 구획의 면적이 20에이커 미만인 경우에만 아래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세요.



최근 5년간의 기록에 따라 다음을 기재하세요.

문항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평균
최근 5년간의 에이커당 수확량을 기재하세요(부셸, 파운드, 톤 등의 단위).						
최근 5년간의 에이커당 연간 소득을 기재하세요.						
임차 또는 임대한 경우, 최근 5년간의 에이커당 연간 총 임대료를 기재하세요.						
총 작물 또는 단기 윤작 수목의 경우, 올해 및 전년도의 에이커당 평균 투자액을 기재하세요.						

참고: 소유자는 구획 규모와 무관하게 토지에서 적절한 농업 활동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류된 토지의 사용, 일반 작물의 생산성, 소득 등의 관련 데이터를 감정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의 및 추가 정보

농지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구획 또는 인접한 토지 구획을 의미합니다.

- 20에이커 이상이며 주로 상업적 목적으로 대부분이 가축 또는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토지.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미농무부) 휘하의 Federal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연방자연보호프로그램)에 등록되었거나 그 후속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토지.
- 5에이커 이상 20에이커 미만의 주로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분류 신청 날짜로부터 지난 5년 중 3년간 매해 농업으로 에이커당 \$200.00 이상에 상응하는 총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 올해 또는 전년도에 에이커당 \$100.00 이상에 상응하는 7년 내 수확 예정인 작물 및 이러한 작물 생산에 대해 증명 가능한 투자액이 있습니다.
- 올해 또는 전년도에 에이커당 \$100.00 이상에 상응하는 15년 내에 수확 예정인 단기 윤작 수목 및 이러한 작물의 생산에 대해 증명 가능한 투자액이 있습니다.
- 5에이커 미만이며 분류 신청 날짜로부터 지난 5년 중 3년간 매해 \$1,500.00 이상의 총 소득이 발생한 주로 농업에 사용하는 토지.

또한 농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1~5에이커의 인접하지 않은(이 경우, 맞닿지/붙어있지 않다는 의미) 구획이지만 토지에서 수행되는 농사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
- 농업 사용에 적합한 부수적 용도로써, 분류된 토지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 및 농산물을 생산하는 토지와 더불어 그러한 농산물의 생산, 처리 또는 판매에 필요한 부속물이 있는 토지.
- 마구간, 훈련, 승마, 치료, 교육, 쇼, 사육을 위한 방목 등의 비용이 청구되는 승마 관련 활동에 주로 사용되는 토지.
- 농장 운영자 또는 토지 소유자의 주거 주택 또는 직원 주택이 있는 토지로써, 농지가 RCW 84.34.020(2)(a)에 따라 분류되었거나 거주지 또는 주택이 분류된 구획 내 혹은 인접한 곳에 있거나 주택이 농업용으로 분류된 토지의 사용에 중요한 경우.



 구조물 여부와 무관하게 상업적 원예에 주로 사용되는 토지. 소매 목적으로 다른 재배자에게서 구매한 작물의 보관, 관리, 판매에 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거나 컨테이너 내 작물 재배가 주 용도인 경우, 20% 이상이 포장된 토지. 토지의 주 용도가 컨테이너 내 작물 재배이고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5에이커 미만인 경우, 현장 소매를 위해 일반 대중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 25% 이상인 토지는 분류 대상이 아닙니다.

분류 박탈에 따른 추가 세금, 이자, 벌금 안내

- 1. 분류 박탈 시 추가 세금, 이자, 벌금이 부과됩니다. 박탈 후 30일 내 또는 새 소유자가 서명한 Notice of Continuance (연기 통지서)를 승인한 경우가 아닌 한 판매나 이전 후 30일 내에 카운티 재무관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추가 세금, 이자, 벌금은 다음의 총합입니다.
 - a. "농지"로써 지불한 재산세와 최근 7년간 중 토지가 농지로 분류되지 않은 기간에 지불해야 했던 재산세의 차액.
 - b. 재산세 연체에 부과되는 법정 요율과 동일하게 부과되는 (a) 차액에 대한 이자.
 - c. RCW 84.34.070(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소유자의 철회 요청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류된 토지가 다른 용도로 판매, 이전, 사용된 경우 추가 세금 및 이자에 20%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2. (1)에서 규정한 추가 세금, 이자, 벌금은 박탈이 오직 아래의 사유로 이루어졌을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 a. Washington 주 내의 다른 토지를 대가로 정부 기관에 이전.
 - b. 토지수용권의 행사를 통한 취득 또는 토지수용권의 행사에 앞서 그러한 권리가 있는 주체에게 판매, 이전.
 - c. 홍수, 태풍, 지진, 산불 또는 토지 소유주가 해당 자산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로 발생하지 아니한 기타 재난.
 - d. Washington 주 기관 또는 해당 토지가 토지의 현재 용도를 허가하지 않는 카운티, 시에 있는 경우 카운티, 시의 공적 조치.
 - e. 해당 토지가 RCW 84.36.020에 따른 재산세 면제 자격이 있는 경우
 - f. RCW 84.34.210 및 64.04.130에 따른 자격을 갖춘 주정부 기관 또는 기관 또는 조직이 해당 조항에 열거된 목적으로 자산 지분을 취득한 경우(RCW 84.34.108[6][f] 참조).
 - g. RCW 84.34.020(2)(f)에 따라 농지로 분류된 토지의 박탈(주택 용지)
 - h. 토지가 면제 대상이 되는 법정 면제 제정 및 분류에서 토지를 박탈해 달라는 소유주의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의 토지 분류 박탈.
 - i. RCW 76.13.120에 따른 수변림 지역권의 형성, 판매, 이전.
 - j. RCW 76.09.040에 따른 비피압 유로 변경 지역 내 또는 멸종 위협 또는 위기종의 주요 서식지가 포함된 사적 삼림지의 환경보호 지역권 형성, 판매, 이전.
 - k. 토지가 삼림지 분류로 감정 및 평가되었거나 84.33 RCW에 따라 삼림지로 지정되었거나 1993년 이래 계속이 장에 따라 분류된 경우, 토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소유자의 사망 후 2년 내 토지의 판매 또는 이전.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일자가 기준일자로 사용됩니다(WAC 458-30-300[5][k] 참조).
 - 소유자의 과실이 아닌 오류로 인해 토지가 분류된 것이 발견된 경우.